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 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회계감사 의견 확정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8. 나. 모투자 신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 대상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추가)	[베어링 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투자 대상 (현행과 같음) <b>주 1)</b>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b>주 2)</b>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에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p>(생략)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 대상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추가)</p>	<p>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현행과 같음)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1) 투자 대상 (생략) 주 1)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주 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이하 현행과 같음)</p>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이하 생략) (추가)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14.나. 2)수익자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p>과세- 퇴직연금계좌의 세제</p>		<p>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b>400</b>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b>700</b> 만원 중 적은 금액의 <b>12%</b>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b>4천만원</b>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b>5천500</b>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b>15%</b>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u>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u></p> <p>(생략)</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p>	<p>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b>600</b>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b>900</b> 만원 중 적은 금액의 <b>13.2%(지방소득세 포함)</b>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b>4천5백만원</b>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b>5천500</b>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b>16.5%(지방소득세 포함)</b>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삭제)</p> <p>(현행과 같음)</p> <p>(삭제)</p>
-----------------------	--	---	--

		<p>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이하 생략)</p>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회계감사 의견확정</p>	<p>1. 재무정보 (생략)</p> <table border="1" data-bbox="860 762 1395 927"> <thead> <tr> <th>기간</th> <th>회계감사법인</th> <th>감사의견</th> </tr> </thead> <tbody> <tr> <td>14 기</td> <td>삼덕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r> <td>15 기</td> <td>삼덕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r> <td>16 기</td> <td>삼덕회계법인</td> <td>감사의견 확정 전</td> </tr> </tbody> </table>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14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5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6 기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확정 전	<p>1. 재무정보 (현행과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1453 762 1989 927"> <thead> <tr> <th>기간</th> <th>회계감사법인</th> <th>감사의견</th> </tr> </thead> <tbody> <tr> <td>14 기</td> <td>삼덕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r> <td>15 기</td> <td>삼덕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r> <td>16 기</td> <td>삼덕회계법인</td> <td>적정</td> </tr> </tbody> </table>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14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5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6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14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5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6 기	삼덕회계법인	감사의견 확정 전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14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5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16 기	삼덕회계법인	적정																									
<p>제 3 부.1.가.요약재 무정보</p>	<p>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p>	<p>(주석 추가)</p> <p>(신설)</p> <p>(신설)</p>	<p>주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베어링 국공채 증권 모두자신탁(채권)의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16기 32백만원, 15기 15백만원, 14기 15백만원). 모두자신탁 내 지분율을 반영하여 안분한 이 투자신탁의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16기 30백만원, 15기 14백만원, 14기 14백만원)</p> <p>주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16기 0원, 15기 0원, 14기 0원)</p> <p>&lt;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gt;</p> <p>&lt;주식의 매매회전율&gt;</p>																								

<p>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p>	<p>(생략)</p>	<p>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	-----------------------	-------------	---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결산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8. 나. 모투자 신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1) 투자 대상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추가)	1) 투자 대상 (현행과 같음) <b>주 1)</b>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b>주 2)</b>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음 1.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이하 생략)	수수료 수익을 추구 2.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추가)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결산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	수익률 변동성 <u>20.85%</u>	수익률 변동성 <u>21.16%</u>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주 1)~주 3) (생략) (추가)  (이하 생략)	주 1)~주 3) (현행과 같음) 주 4)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거래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의미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2.01.01 ~ 2022.12.31) 증권거래비용: 163,082 천원 / 금융비용: 해당사항 없음 (이하 현행과 같음)
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결산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 3) (생략)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가입자	1) ~ 3) (현행과 같음)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가입자

		<p>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b>[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b> (생략)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b>400</b> 만원 이내 세액공제 <b>12%</b>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b>4천만원</b>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b>5천 5백만원</b>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b>400</b> 만원 이내 세액공제 <b>15%</b>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b>1억원</b>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b>1억 2천만원</b>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b>300</b> 만원 이내 세액공제 <b>12%</b> (생략)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b>2천만원</b>을 초과하지 않는 <b>50세</b> 이상 거주자 <b>[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b>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b>600</b> 만원 이내 세액공제 <b>12%</b>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b>4천만원</b>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b>5천 5백만원</b>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b>600</b> 만원 이내 세액공제 <b>15%</b>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b>1억원</b>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b>1억 2천만원</b>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p>	<p>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b>[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b> (현행과 같음)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b>600</b> 만원 이내 세액공제 <b>13.2%</b>(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b>4천 5백만원</b>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b>5천 5백만원</b>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b>600</b> 만원 이내 세액공제 <b>16.5%</b>(지방소득세 포함)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p>
--	--	---	--



		<p><u>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u>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u>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u>  분리과세 한도: <u>1,200 만원</u>(공적연금소득 제외)</p> <p>(생략)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p> <p>(생략)</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가입자</p> <p>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u>400 만원</u>이내의 금액)과 연 <u>700 만원</u> 중 적은 금액의 <u>12%</u>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u>4 천만원</u>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u>5 천 500 만원</u>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u>15%</u>에</p>	<p>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p> <p>분리과세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이 <u>1,200 만원</u>(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u>16.5%</u>,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가능  (현행과 같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u>5.5 ~ 3.3%</u>(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p> <p>(현행과 같음)</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P2e)가입자</p> <p>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u>600 만원</u>이내의 금액)과 연 <u>900 만원</u> 중 적은 금액의 <u>13.2%</u>(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u>4 천 5 백만원</u>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u>5 천 500 만원</u>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p>
--	--	---	---

		<p>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생략)</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삭제)</p> <p>(현행과 같음)</p> <p>(삭제)</p>
--	--	--	--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제 3 부.1.가. 요약재무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주식 추가)  (신설)  (신설)	주3)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7기 0원, 6기 0원, 5기 0원) 주4)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7기 0원, 6기 0원, 5기 0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제 3 부.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결산일 업데이트	(생략)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결산 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결산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결산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결산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퇴직연금 배당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최근 자료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생략)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	(현행과 같음)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 천 5 백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u>추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u> <u>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u> <u>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u> <u>공제합니다.</u> (이하 생략)	(이하 현행과 같음)
--	--	--	-------------